의안번호	제172호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9. 11. 15.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172호

제출연월일 : 2019. 11. 15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 기준 인건비 정원증가분 반영 및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,

○ 사무량이 과중한 부서의 사무 분리를 통해 기구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2020년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반영 및 중앙-도-시간 협력체계 구축 파견인력의 직급·직렬별 정원표 정비 (안 제20조, 안 별표 6)

► 정원증가분 : 총 22명

- 미세먼지 전담인력 : 2명
- 농약안전성 분석 전담 : 2명
- 재난안전 전담인력 : 1명
-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: 1명
- 자살예방 전담인력 : 1명
-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: 1명
- 지역현안사업 추진 : 14명

► 중앙-도-시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파견인력 정원 조정

- 5급 정원 2명 증원

나. 한시기구 존속기한 정비(안 별표 7)

- 한시기구 존속기한 : 2019. 12. 31까지 ⇒ 2020. 12. 31까지

다. 과 분리(안 제5조)

- 도시재생과 ⇒ 도시정책과, 도시친화재생과
- 도로교통과 ⇒ 안전도로과, 시민교통과

라. 시설명칭 변경(안 제16조)

- 공설운동장 ⇒ 시민운동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개정조례안 공포 후 추경에 반영 예정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2) 성별영향평가 :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절차 종료

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(가) 예고기간 : 2019. 10. 24. ~ 2019. 11. 12.(20일간)

(나) 예고결과 : 붙임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

(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자치행정과(☎ 041-635-2332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도시재생과, 도로교통과”를 “도시정책과, 도시친화재생과, 안전도로과, 시민교통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시정기획 · 정책개발 · 국제교류 · 성과평가”를 “시정기획 · 정책개발1 · 정책개발2 · 생활SOC추진 · 성과평가”로 한다.

제16조제1호라목 중 “논산공설운동장”을 “시민운동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067명”을 “1,08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051명”을 “1,07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5, 별표 6,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도시재생과, 도로교통과”를 “도시정책과, 도시친화재생과, 안전도로과, 시민교통과”로 한다.

②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③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친화재생과장”으로 한다.

④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⑤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4항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친화재생과장”으로 한다.

⑥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친화재생과장”으로 한다.

⑦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친화재생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도시재생과”을 “도시친화재생과”으로 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안자	행정지원과장	이 영 태
	인 사 팀 장	윤 승 우
	담 당 자	황 준 용 (746-5233)

【별표 5】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21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퍼센트 이내	7퍼센트 이내	28퍼센트 이내	33퍼센트 이내	25퍼센트 이내	6퍼센트 이상

2. 연구직 · 지도직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퍼센트 이내	97퍼센트 이상	12퍼센트 이내	88퍼센트 이상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 · 9급상당
비 율	0퍼센트	50퍼센트이내	0퍼센트	50퍼센트이상

【별표 6】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총 계	집행기관					의회 사무기구	
		소 계	본 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	소계	의회 사무국
총 계	1,089	1,073	1,073				16	16
정무직 계	1	1	1					
시 장	1	1	1					
일반직 계	1,043	1,027	1,027				16	16
3급	1	1	1					
4급	6	5	4	1			1	1
5급	59	57	34	6	2	15	2	2
6급 이하	974	961	961				13	13
전문경력관	3	3	3					
별정직 계	2	2	2					
6급상당 이하	2	2	2					
연구직 계	4	4	4					
연구관								
연구사	4	4	4					
지도직 계	39	39	39					
지도관	4	4	4					
지도사	35	35	35					

【별표 7】

한시기구의 직급별 정원 및 운용시한(제22조제1항 관련)

관리기관별	소속부서	구분		정원	운용시한	비고
		직 종	직급			
총 계		총 계		1		
		일반직	4급	1		
본청	미래발전사업단 (국방협력과)	일반직	4급	1	2020년 12월 31일까지	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행복도시국) ① 행복도시국에 사회적경제과, 농업정책과, 축산자원과, 산림공원과, 희망마을건설과, 도시재생과, 도로교통과, 원스톱허가과, 맑은물과를 둔다.	제5조(행복도시국) ① ---------- -- 도시정책과, 도시친화재생과, 안전도로과, 시민교통과----------.
제7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) 시 행정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략기획실, 참여예산실, 청렴감사실, 열린홍보실을 두며, 전략기획실은 시정기획·정책개발·국제교류·성과평가 사무를, 참여예산실은 예산·재정지원·의회법무·규제개혁통계 사무를, 청렴감사실은 감사·조사·계약심사·특사경전담 사무를, 열린홍보실은 홍보기획·언론홍보·뉴미디어 사무를 분장한다.	제7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) ---------- 시정기획·정책개발1·정책개발2·생활SOC 추진·성과평가----------.
제16조(업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공시설사업소 가. ~ 다. (생 략) 라. 논산공설운동장 관리에 관한 사항 마. ~ 사. (생 략) 2. (생 략)	제16조(업무) ----------. 1. -----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시민운동장 ---------- 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,067명으로 하고,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.051명 2. (생 략)	제20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 1,089명----------. 1. ---------- 1.073명 2. (현행과 같음)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【별표 5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(제21조제2항 관련)	【별표 5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(제21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퍼센트 이내	7퍼센트 이내	28퍼센트 이내	33퍼센트 이내	25퍼센트 이내	6퍼센트 이상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퍼센트 이내	7퍼센트 이내	28퍼센트 이내	33퍼센트 이내	25퍼센트 이내	6퍼센트 이상

2. 연구직 · 지도직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퍼센트 이내	97퍼센트 이상	12퍼센트 이내	88퍼센트 이상

2. 연구직 · 지도직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퍼센트 이내	97퍼센트 이상	12퍼센트 이내	88퍼센트 이상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 · 9급 상당
비 율	0퍼센트	34퍼센트 이내	0퍼센트	66퍼센트 이상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 · 9급 상당
비 율	0퍼센트	50퍼센트 이내	0퍼센트	50퍼센트 이상

현 행

【별표 6】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

(제2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총 계	집행기관					의회 사무기구	
		소계	본청	직속 기관	사업 소	읍면 동	소계	의회 사무국
총 계	1,067	1,051	1,051				16	16
정무직 계	1	1	1					
시 장	1	1	1					
일반직 계	1,022	1,006	1,006				16	16
3급	1	1	1					
4급	6	5	4	1			1	1
5급	55	53	30	6	2	15	2	2
6급이하	960	947	947				13	13
별정직 계	3	3	3					
6급상당 이하	3	3	3					
연구직 계	4	4	4					
연구관								
연구사	4	4	4					
지도직 계	37	37	37					
지도관	4	4	4					
지도사	33	33	33					

개 정 안

【별표 6】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

(제2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총 계	집행기관					의회 사무기구	
		소계	본청	직속 기관	사업 소	읍면 동	소계	의회 사무국
총 계	1,089	1,073	1,073				16	16
정무직 계	1	1	1					
시 장	1	1	1					
일반직 계	1,043	1,027	1,027				16	16
3급	1	1	1					
4급	6	5	4	1			1	1
5급	59	57	34	6	2	15	2	2
6급이하	974	961	961				13	13
전문경력관	3	3	3					
별정직 계	2	2	2					
6급상당 이하	2	2	2					
연구직 계	4	4	4					
연구관								
연구사	4	4	4					
지도직 계	39	39	39					
지도관	4	4	4					
지도사	35	35	35					

현 행

[별표 7]

한시기구의 직급별 정원 및 운용시한

(제22조제1항 관련)

관리기관별	소속부서	구분		정원	운용시한	비고
		직종	직급			
총 계		총 계		1		
		일반직	4급	1		
본청	미래발전 사업단 (국방 협력과)	일반직	4급	1	2019년 12월 31일까지	

개 정 안

[별표 7]

한시기구의 직급별 정원 및 운용시한

(제22조제1항 관련)

관리기관별	소속부서	구분		정원	운용시한	비고
		직종	직급			
총 계		총 계		1		
		일반직	4급	1		
본청	미래발전 사업단 (국방 협력과)	일반직	4급	1	2020년 12월 31일까지	

붙임 1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

1. 의견수렴 기간 : 2019. 10. 24 ~ 11. 12

2. 의견수렴 방법

○ 입법예고

3. 의견수렴 결과

○ 의견제출 : 총 2건

○ 의견내용 및 반영여부

의견 제출자	의 견 내 용	반 영 여 부
행정지원과	○ **신설부서명칭의 변경** - 신설 부서명칭에서 부서별 정책 추진의 방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서명칭 변경	○ **신설되는 부서명칭 변경** - 당초) 도시계획과, 도시재생과 도로과, 교통과 - 변경) 도시정책과, 도시친화재생과 안전도로과, 시민교통과 - 도시정책의 수립,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친화적 수행을 위한 부서명칭으로 **변경 반영** - 안전한 도로 설치 및 관리 추진 시민들을 생각하는 교통지원을 위한 부서명칭으로 **변경 반영**
행정지원과	○ **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** -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필요	○ **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** - 당초) 일반직 1,025명 별정직 3명, 지도직 40명 - 변경) 일반직 1,027명 별정직 2명, 지도직 39명 - 부서 신설에 따른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내 부서별 **정원 조정 반영**

붙임 2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ㅇ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(정원의 총수)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단가(30,000천원)로 산정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.0% 적용

ㅇ 직급 변동에 따른 직급간 인건비 차액을 반영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.0% 적용

나. 추계결과 : 2,045,218천원(5년)

ㅇ 평균인건비 : 2,045,218천원 (단위 : 천원, 명)

구 분	1인기준액	인원	금 액	연 도	합 계
합 계		22	413,554	5개년	2,045,218
기준인건비 기 준	30,000	11	360,000	5개년	1,752,015
직급 변경 차액 (9급 ⇒ 8급)	1,672	3	3,344	5개년	26,631
직급 변경 차액 (8급 ⇒ 7급)	2,522	2	5,044	5개년	26,779
직급 변경 차액 (7급 ⇒ 6급)	3,765	2	7,530	5개년	39,978
직급 변경 차액 (6급 ⇒ 5급)	9,409	4	37,636	5개년	199,815

3. 작성자

행정지원과장 이 영 태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							
시 비							
세 출		385,226	396,783	408,686	420,947	433,576	2,045,218
인건비		385,226	396,783	408,686	420,947	433,576	2,045,218
○ 보수		385,226	396,783	408,686	420,947	433,576	2,045,218
재원 조달		385,226	396,783	408,686	420,947	433,576	2,045,218
의존 재원	소 계	385,226	396,783	408,686	420,947	433,576	2,045,218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385,226	396,783	408,686	420,947	433,576	2,045,218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12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· 자격 · 보수 · 복무 · 신분보장 · 징계 ·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,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④ 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